

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 보고

1. 심사경과

가. 의안제출 : 2003. 12.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12. 1.

다. 의안번호 : 제 2003 - 61호

라. 상정일자 : 2003. 12. 8.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상담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 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거창군청소년상담실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상담실의 설치기준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둠
- 상담요원 구성 및 상담실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둠
- 상담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 신규 임용 연령제한, 신분보장과 정년, 복무, 보수 등에 대한 규정을 둠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가. 청소년 상담실의 소재지(제2조)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무실이 있음에도 정확한 소재지를 명기하지 아니한 사유 설명.

————— < 현재 소재지 >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1번지 문화의집 내

나. 시설운영 · 인력채용과 설치조례와의 관계

-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채용(1999. 3. 30)을 비롯한 제반 준비를 갖추고 2001. 6. 30.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음
 - 1) 현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2) 상담원 임용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필요
 - 3) 설치조례가 먼저인지 상담소운영이 먼저인지 설명필요

다. 상담원 등 임용자격 기준(제7조, 별표1)

- 제3호에 상담요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1에서 정하고 있음.
- 청소년 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5조에 의하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돋는 청소년 상담사는 자격 검정을 거쳐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시장 · 군수는 상담실의 상담인력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충원토록 노력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동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다고 봄.

- 1) 현 상담요원 중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상담요원이 있는지와 자격증 미 소지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계획 설명.
- 2) 결원발생으로 상담요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를 위해 임용자격기준에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자를 채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대한 설명 필요

라. 상담원 등의 복무

- o "야간상담실" ⇒ "야간상담"

마. 상담원 등의 복무

- o 명예상담실장은 제5조 제2항에 의한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군수가 위촉자를 의미한다면
- o "명예상담실장" ⇒ "위촉된 명예직 상담실장"

바. 당연퇴직 또는 면직

- 1)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했으나,
공무원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서 당연퇴직을 시킬수 없도록 한 것은 2002. 8. 29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02. 12. 18 동 조항을 개정하여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음.

⇒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

2) 제3호의 경우 당연퇴직인지 직권면직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함.

⇒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직권면직 시킬수 있다”로 수정

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

○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폐합 하는 추세에 있음.

○ 또, 같은법 제13조에서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거창군청소년위원회 및 운영조례가 1991년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1)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위원회 개최실적이 얼마나 되며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2) 청소년 위원회 위원은 관련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할 수 있고,

상담실운영협의회 위원은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어 유사하고,

또, 위원 위촉시 중복될 소지가 다수 있고 기능이 유사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청소년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 제2항 제2호 중 위원의 참석 수당지급 근거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9조와 일치 p5)
⇒ 2.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 준용규정

- o 지침과 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지침을 법 보다 지침을 먼저 기술
⇒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으로 수정

4. 질의 및 답변요지(생 략)

5. 토론요지(생 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부결

- o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돋기 위한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

- 관련법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할 부분이 많아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 략)

- 상담요원 임용기준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자를 명문화할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수급문제는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생 략)